

#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 정 : 2010. 2. 25.

전면개정 : 2012. 2. 25.

## 제 1 장 총 칙 <12. 2. 25.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장애인력비협회 (이하 “본 협회’라 표기)에서 합리적인 국가대표 임원 및 선수 선발을 위해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협회의 선수 선발 및 훈련 일 수 및 경기력 능력에 대해 평가하며 한국 장애인력비의 발전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징계함으로서 건전한 체육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대한장애인력비협회에 소속 되어 있는 선수( 등록선수라 함은 매년 등록을 필한 선수) 임원등에게 적용된다.

**제3조 (기능)** 본 규정은 다음과 기능을 한다.

- ① 매년 장애인력비 국가대표 선수 선발
- ② 매년 한국 장애인력비팀을 대표하는 임원 선발

**제4조 (조직)** 국가대표 선발에 있어서 강화위원회 규정 제4조에 의해 결정한다.

**제5조 (상벌에 관한 사항)** 상벌에 관한 사항은 강화위원에서 별도 선수 징계, 표창을 한다.

## 제2장 국가대표 임원 선발 <12. 2. 25. 개정>

**제6조 (국가대표 임원의 구분)** ①국가대표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1. 감독 1인
2. 코치 1인
3. 트레이너 1인
4. 보조트레이너 약간인

② 4번에 대해서는 장비, 생활지원에 대해서 반드시 포함 시킨다.

③ 다만 당해연도 예산에 따라 인원이 약간의 증원과 변동이 가능하다.

**제7조 (대표 임원의 의무)** ① 본 협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훈련 및 경기에 참가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국가대표로써 자부심과 품위를 지키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선발시기 및 기간)** 매년도 공개모집을 하며 강화위원에서 추천 선발하며 그 시기는 일정에 따라 훈련 전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선발 절차 및 방법)** ① 선발을 행함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확정한다.

② 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자만을 대표급 임원으로 확정한다.

**제10조 (대표 임원 적용대상)** 대표 임원에 적용에 대해서는 별표-1 대표 임원 선발 기준표와 같다.

**제11조 (대표팀 감독 선임과 해임 등)** ① 대표팀 감독은 장애에 이해가 깊고, 상비군 이상 또는 그와 유사한 지도자 능력을 갖춘 자로서 본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대표팀 감독 재직기간은 1년이며(금년 1월 1일부터 차기년 1월 1일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③ 대표팀 감독은 매년 훈련 및 대회 결과보고서와 본 협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

### 제 3 장 대표 선수 선발 <12. 2. 25. >

**제12조 (대표선수의 구분)** 매해 년도 대회등을 통해 선발하며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하고 기본 12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대표선수의 의무)**

① 본 협회에서 시행하는 각종훈련 및 국제경기에 참가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국가대표급 선수로서의 자부심과 품위를 지키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선발시기 및 기간)** 매년도 선수권대회 혹은 본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 의해 선발한다. 또한 강화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수시 교체가 가능하며 매년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표선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15조 (선발절차 및 방법)

- ① 선발을 행함에 있어서는 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② 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통과된 자만을 대표급 선수로 확정한다.

제16조 (선발통보) 확정된 선수는 각 시도지부와 각 팀에 통보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결원보충) 선발된 선수의 결원발생 시는 그 인원수에 한하여 선발절차를 거쳐 강화위원회의 결재를 받아 충원할 수 있다.

제18조 (상벌 해임관계) 위원회는 대표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화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해당선수를 징계 해부할 수 있다. 특히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선수는 포상 추천을 할 수 있다.

제19조 (대표선수의 국내·외 훈련) 선수의 소속팀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대표팀 훈련에 임할 수 있으나 일차로 대표 감독의 승인을 득하여 협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내에 거주하면서 협회가 주관하는 각종 국내·외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는 강화위원회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제20조 (대표선수 적용대상)

1. 국가대표선수 : 남·여 16세 이상  
\* 상기의 원칙은 선발시점 기준나이이며 필요시 약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 국내 대회 불참가 선수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국내 대회는 의무 참가로 하며, 공식적인 국제경기 참가 시 제외)
3. 국가대표 본인 거부 시 향후 2년 동안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 (대표선수 선발기준) 대표 선수 선발 기준은 별표-2의 대표선수 평가표와 같이 하며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강화위원회를 거쳐 대표 감독에게 선임한다.

### 제 4 장 후보 선수 <12. 2. 25. >

제22조 (후보선수의 구분) ① 후보선수의 임원과 선수 인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1. 코치                    1인
2. 트레이너            1인
3. 보조트레이너      2인
4. 선수                 8인

② 후보선수의 인원은 제①항과 같이 하며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하다.

**제23조 (임원 선발)** 별도로 강화위원에서 선발 가능하며 국가대표 임원과는 별도로 한다. 다만 훈련의 사정과 일정에 따라 통합 폐지 운영될 수 있으며 보조트레이너 같은 경우 겸직이 가능하다.

**제24조 (선수 선발)** 별도 강화위원에서 선발 가능하며 경기력의 향상이 기여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임의의 선수 선발 후 훈련가능 하며 반드시 강화위원회의 승인이 필요로 한다. 선발 해임에 관한 사항은 강화위원회에서 별도로 진행한다.

**제25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0.2.25.)

## 부 칙 (12. 2. 25.)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 2. 25.)

<별표-1> 대표 임원 선발 기준표 (제2장 10조)

구분	적용 대상	비고
감독	* 필수 사항 2가지 1. 체육관련 학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2. 휠체어력비 감독 경력 5년 이상 * 선택 사항 중 4개 이상 3. 휠체어력비 관련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4. 장애인관련 10년 이상 경력자 5. 선수로써 10년 이상 경력자 6. 경기지도자 2급 이상 소지자 7. 휠체어력비 국제자격증 소지자 8. 시도장애인체육회 혹은 본 협회 추천자	* 대상자 미선정시 강화위원회에서 별도 선정
코치	* 필수 사항 2가지 1. 체육관련 학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2. 휠체어력비 감독 경력 5년 이상 * 선택 사항 중 3개 이상 3. 휠체어력비 관련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4. 장애인관련 8년 이상 경력자 5. 선수로써 10년 이상 경력자 6. 경기지도자 2급 이상 소지자 7. 휠체어력비 국제자격증 소지자 8. 시도장애인체육회 혹은 본 협회 추천자	* 대상자 미선정시 강화위원회에서 별도 선정
트레이너	1. 체육관련 학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2. 휠체어력비 관련 5년 이상 경력자 3. 휠체어력비 관련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4. 생활체육지도자 3급 자격 소지자 5. 트레이너 관련 자격 소지자 6. 시도장애인체육회 혹은 본 협회 추천자 * 위 사항 중 4개 이상	* 대상자 미선정시 강화위원회에서 별도 선정
보조 트레이너	1. 휠체어력비 관련 자격소지자 2. 장애인관련 종사자 3. 시도장애인체육회 혹은 본 협회 추천자 * 위 사항 중 1개 이상	* 대상자 미선정시 강화위원회에서 별도 선정

<별표-2> 대표 선수 평가표 (제3장 21조)

1) 대회별 선정 (60%)

구분	득점력				경기력				수비력				스피드				패스력			
	6	8	9	10	6	8	9	10	6	8	9	10	6	8	9	10	6	8	9	10
0.5																				
1.0																				
1.5																				
2.0																				
2.5																				
3.0																				
3.5																				

\* 강화위원의 평가에 의하여 선수 선발

2) 일반 선정 (20%)

매번 대회에서 우수한 기량으로 선정

3) 지부 및 팀 추천 (20%)

국가대표 선수 선발 관련 추천, 가능성과 인성을 갖춘 선수 선발